

외환거래약정서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거래처 : _____ (인)

주소 : _____ (인)

| | | |
|---|---|--|
| 인 | 감 | |
| 대 | 조 | |

| | |
|--------|--|
| 제 13 조 | |
| 확 인 | |

| | |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 (인) |
|-----------------------------------------|-----|

위 거래처(이하 “거래처”라 함)와 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제1조 각 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2. 외국통화간의 매매
3. 통화옵션거래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관련 규정의 준수

- ①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외환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법규(은행법 및 규정과 자본시장법 및 규정)를 완전하게 준수한다.
- ② 거래처는 개별 외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외환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주요거래 증빙서류 또는 은행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 3 조 외환계약의 체결 및 성립

- ①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은 서면 합의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그 밖의 전자수단(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 외환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거래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의 성명,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서명, 전화번호("수권전화번호"라 함)(이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는 별지 기재와 같다.
- ③ 거래처는 제2항의 각 항목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은행에 통지하기로 한다.

제 4 조 시간외 거래 또는 장외 거래

이 약정에 의한 외환계약은 거래처 및 은행의 영업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또는 거래처 및 은행의 사무실 내·외 어디에서든 제3조 제2항에 의한 거래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결된 외환계약은 영업시간 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은행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제 5 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 ① 이 약정에 따라 성립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일 다음()영업일까지 은행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그 밖의 전자수단을 이용하여 교환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은 즉시 이 외환거래의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외환거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외환계약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며, 은행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외환계약의 성립, 유효성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거래처는 **의의가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제1항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이 약정에 따른 외환거래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전화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 6 조 약정간의 관계

- ① 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외환거래의 모든 조건 (그리고 동 조건이 외환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이 약정서에 대한 부록(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은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한다.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는, 그러한 개별 거래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체결되었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대출 등 그 밖의 외환거래를 의뢰한 경우에 있어서는 외환거래의 성립에 의하여 은행이 당연히 이들의 의뢰에 응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 7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 ①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처는 은행과 협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 ②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환율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는 은행과 협의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8 조 인도일 산정

- ①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 (한국 및 해당 통화 사용 국가/지역에서의 은행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기산하고,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간의 선물환거래의 경우 해당통화별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에 따른다.
- ②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고,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기산일과 같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그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기산일과 같은 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말일을 인도일로 한다.
- ③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 ④ 거래처의 선택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처는 인도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의 2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이를 통지한다.

제 9 조 은행에 의한 인도일의 연기 또는 계약의 종료 등

- 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은행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인도일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은 당해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반대거래로써 개별 외환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해당일 시장환율로 한다. 만약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환율이 없을 경우 은행은 다른 주요 은행들 2곳 이상으로부터 가격제시를 받아 평균환율로 결정한다.

제 10 조 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변경 또는 해지 등

거래처는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은행에 의한 해지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거래처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모든 개별 외환계약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즉시 통지를 보내어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개별 외환계약이 해지될 경우 거래처는 그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를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손해액을 은행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개별 외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은행은 (가) “해지결제액”과 해지된 외환계약상 거래처의 은행에 대한 미지급액을 더한 금액에서, (나) 해지된 외환계약상 은행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액을 뺀 금액을 원화 또는 미 달러화로 환산하여 해지된 모든 개별 외환계약에 적용될 단일한 해지정산금을 산정한다. 해지정산금이 양수인 경우 거래처가 은행에 동 금액을 지급하며, 해지정산금이 음수인 경우 은행이 거래처에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 항에서 “해지결제액”은 (i)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해지된 외환계약상 요구되었을 해당 지급금액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은행이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은행에 지급할 금액(양수로 표시) 또는 은행이 지급할 금액(음수로 표시)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호가된 금액(시장호가) 또는 (ii) 시장호가를 결정하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장호가에 의한 해지결제액 계산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 해지된 각 외환계약에 대한 거래의 상실(loss of bargain), 자금조달 비용 또는 그 밖의 발생비용 등 은행의 모든 손해 금액(계산근거를 명시함)을 의미한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 12 조 결제 등

- ①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외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 개별 외환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거래처가 결제기일 내에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게 거래처가 은행에 개설한 계정에서 외환계약의 결제를 위하여 즉시 차기할 권한을 부여한다. 은행이 거래처의 계정에서 차기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 ③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직원 및 / 또는 임원과 은행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은행과의 외환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은행이 문서가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결제에 관한 특약

이 약정에 따른 개별 외환계약의 결제에는 다음 각 항 중 항을 적용한다. (항 삭제①)

① **차액결제(Settlement Netting)방식** - 어느 개별 외환계약에 따라 거래처가 일정한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제2통화”)와 교환으로 은행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래(“거래A”)의 인도일이, 다른 개별 외환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1통화를 제2통화와 교환으로 거래처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래(“거래B”)의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위 개별 외환계약들에 의한 결제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차액결제에 의하여 “거래 A” 및 “거래 B”에 따라 은행 및 거래처 각자의 인도의무는 인도일에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이행된 것으로 본다.

- (1) 각각의 통화에 관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과 대등한 경우에는 쌍방의 인도의무는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소멸한다.

② **경계에 의한 정산(Netting by Novation) 방식** - 어느 개별 외환계약(“계약A”)에 따라 거래처 또는 은행이 일정한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제2통화”)와 교환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이,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개별 외환계약(“계약B”)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제1통화를 제2통화 또는 그 밖의 다른 통화(“제3통화”)와 교환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후에 체결된 계약B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A와 계약B에 따른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채무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본다.

- (1) 제1통화에 관하여 (제2통화도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경우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한다.
- (2) 제1통화에 관하여 (제2통화도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경우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는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본조에 따른 정산의 효과는 공통되는 통화에 한정되며, 계약A와 계약B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서로 상이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거래처가 위 인도일에 각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채무는 본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비용 등의 부담

- ①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손해배상금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로 한정한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거래처가 부담하고 거래처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② 거래처는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은행의 원화여신(당해 통화가 원화인 경우) 또는 외화여신(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계약체결시 은행과 거래처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 ④ 은행은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거래처는 동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처에 도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거래처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채무자")가 약정된 통화("계약통화") 이외의 통화("지급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 한도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초과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채무는 기존 외환계약에 따른 지급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 본다.

제 15 조 양도금지 등

거래처는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외환거래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거래처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때 발효한다. 이 경우 해지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약정이 계속 적용된다. **해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언어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18 조 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은행은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외국환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제 19 조 약정서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정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정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이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약정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정서를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 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 및 수권전화번호

| 성 명 | 부 서 / 직 책 | 서명/서명감/인감 | 수권전화번호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